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 확대〉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 범위 확대	3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 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IV. 검토의견

1.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에 있음에도 현행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현행법상 어촌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 6. (생략)	<u>다.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u> 3. ~ 6. (현행과 같음)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u> <u>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	--

나. 검토의견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 제18조의2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 경영 어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를 두고, 지급요건 중 하나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직불금 지급요건인 “어촌”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인용하여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①읍·면의 전 지역이나 ②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어항의 배후지역이 관광지화,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해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가 빈번하여 일부 어민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상당수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항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거주지의 용도 지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지역에 있는 상업·공업지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어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어항 인근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 중인 어업인 3,265명¹⁾이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1) 어항이 위치하는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현황은 ☞ [참고자료] 1 참조

편입되고, 이 중 실제로 직불금을 수령하게 될 인원은 약 1,208 ~ 2,171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²⁾.

□ 이와 관련, 개정안의 조문구성에 있어 다음 사항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어촌에 상업·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조에 따른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어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제도이므로, 법 전체에 적용되는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기보다는 근거조문에서 어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정안이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어촌의 정의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상 어촌의 정의와 달라지게 되어 두게 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소규모어가 직불제도에 관한 제18조의2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부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여짐.

□ 그 밖에 개정안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농림분야의 경우 ‘농촌’의 정의에서 동의 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하여 소규모농가·임가 직불제를 운영 중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규모 추계 내용은 ☞ [참고자료] 2 참조

해양수산부는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과 달리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어항은 상업·공업지역과 공존하므로, 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어항이 위치하는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현황

□ [예시] 강원 속초시 속초항 주변 용도지역



□ 전체 10개 시·도 / 72개 동 / 어업인 3,265명

광역	기초	해당 동(洞)	어업인 수
인천	동구	화수2동	8
		만석동	7
	중구	항동	13
	소계	3	28
경기	시흥시	월곶동	5
		정왕3동	58
	소계	2	63
강원	동해시	목호진동	46
		대진동	58
		어달동	35
		천곡동	21
		구미동	5
	속초시	동명동	16
		대포동	60
		장사동	17
	삼척시	정하동	15
	소계	9	27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99
		다대2동	27
		장림1동	28
		하단1동	21
		감천1동	7
	수영구	민락동	70
	해운대구	우2동	11
		중1동	25
		중2동	53
		송정동	44

광역	기초	해당 동(洞)	어업인 수
	강서구	명지1동	209
		신호동	101
	남구	용호1동	29
	서구	암남동	26
	소계	14	850
울산	동구	방어동	144
		일산동	36
	북구	정자동	44
		구유동	71
		산하동	31
	소계	5	326
경북	포항시	송도동	33
		해도동	30
		중앙동	-
		죽도동	6
	소계	4	69
경남	창원시	원포동	34
		덕동동	86
		죽곡동	14
		명동	149
		행암동	16
		안곡동	50
		서호동	10
	사천시	노룡동	8
		대방동	26
		동금동	101
		서금동	12
		향촌동	82
		송포동	11
	거제시	고현동	49
		옥포동	57
		장승포동	42
		능포동	34
	통영시	무전동	137
	소계	18	917
전북	군산시	소룡동	88
	소계	1	88
전남	목포시	항동	1
		연산동	47
		율도동	69
	여수시	수정동	4
		국동	80
		경호동	134
		오천동	9
		만흥동	9
		도이동	-
	광양시	도이동	-
	소계	9	353

광역	기초	해당 동(洞)	어업인 수
제주	제주시	건입동	54
		도두일동	57
		화북일동	34
		삼양일동	15
	서귀포시	강정동	69
		법환동	58
		중문동	11
	소계	7	298
총계		72	3,265

참고 2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규모 추계

□ 전국 3,265명이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편입되며 실제로 직불금을 수령하게 될 인원은 1,208*~2,171**명 수준으로 추정

* 전체어가 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 비율(37%) 적용('23년 기준)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어가중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 비율(66.5%) 적용('23년 기준)→ 농·임업 직불금 중복 수령 금지, 어업종사기간(3년),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표 참고)

⇒ 130만원 단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16~28억원의 추가 예산* 필요

* ('23 실적행률) 73%(지급: 어가 16,531호·215억원 / 전체예산 22,665호·295억원)

< 표: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요건 >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 제외	■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억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어업	■ 제외	
		■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신고어업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업 (면허)	■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억원) 미만인 어업인	
	양식업 (허가)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억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억원)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 어업법」	허가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